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및 취소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와 선정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인을 선정하는 절차, 자격요건, 유효기간,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6항”을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을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로, “평가기준, 방법”을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선정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10.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시스템“(이하 ”선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정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를 “직전연도에”로 한다.

제20조 중 “7월”을 “5월”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의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를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5조 앞의 “제3절 시공 종합평가”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의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제2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선정 및 결과 공개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선정기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표 9에 따

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 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선정기관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앞의 “제2절 기타”를 삭제한다.

제2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5장제1절(제2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

제27조(선정 및 결과 공개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선정기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선정기관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제2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제28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선정기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 및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따른 선정분야와 선정인원, 신청 방법 등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선정요건) 제28조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되려는 건설기술인은 규칙 제45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건설기술인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을 것

제30조(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문제의 출제
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
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

④ 선정기관은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선정절차 등) ①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②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确定的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

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⑥ 선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선정기관은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

이 정한다.

1. 책임기술인의 경우: 3년
2. 분야별 기술인의 경우: 3년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2년

⑧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현황을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선정취소)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우수건설기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정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우대) ① 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발주청이 우수건설기술인 우대를 위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선

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건설기술인 증서 수여

2. 그 밖에 선정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 사항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8조)의 제목 “(재검토 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u>지침</u> 은 「 <u>건설기술진흥법</u> 」 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u>평가기준</u> , <u>방법</u>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u>한다</u> .	제1조(목적) -- <u>지침</u> 은 「 <u>건설기술진흥법</u> 」 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u>제85조제1항</u>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 <u>평가기준과 절차</u> 및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u>우수건설사업자</u> 또는 <u>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u> --- <u>한다</u> .
제2조(정의) 이 <u>지침</u> 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 <u>선정기관</u> ”이란 영 제117조 제1항제9호의2 <u>호</u>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u> 을 말한다.
<신설>	10. “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시스템</u> “(이하 “ <u>선정관리시스템</u> ”이라 한다)은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u> , <u>우</u>

	<u>수건설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정기관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 ③ (생략)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u>제3항제2호</u> 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④ ----- <u>제3항</u> -----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평가대상)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u>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u> (개정)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u>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

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u>7월 말일까지</u>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u>5월 말일까지</u>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u>제23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u>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을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삭 제>
<신 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u>종합평가</u>
<u>제24조 (생 략)</u>	<u>제23조 (현 행 제24조와 같음)</u>
<u>제3절 시공 종합평가</u>	<u><삭 제></u>
<u><신 설></u>	<u>제3절 시공 종합평가</u>
<u>제25조 (생 략)</u>	<u>제24조 (현 행 제25조와 같음)</u>
<u>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u> <u>등</u>	<u><삭 제></u>
<u>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u>	<u><삭 제></u>
<u><신 설></u>	<u>제4장</u> <u>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u>
<u><신 설></u>	<u>제1절</u> <u>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u>
<u><신 설></u>	<u>제25조 (현 행 제26조와 같음)</u>
<u><신 설></u>	<u>제26조 (현 행 제27조와 같음)</u>
<u>제2절 기타</u>	<u><삭 제></u>
<u><신 설></u>	<u>제5장</u>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u> <u>선정</u>
<u><신 설></u>	<u>제1절</u> <u>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u> <u>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u>
<u><신 설></u>	<u>제27조(선정 및 결과 공개 등) ①</u> <u>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u> <u>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u> <u>를 완료한 때에는 선정기관은</u> <u>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u>

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10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보망을 말한다. 이하 “정보망”이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영 제85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에 대한 유

	<u>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u> <u>⑤ 선정기관은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보망 등에도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2절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u>
<u><신 설></u>	<u>제28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u> <u>① 선정기관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세부 선정기준 및 별표 9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따른 선정분야와 선정 인원, 신청 방법 등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하여</u>

	<u>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신 설></u>	<u>제29조(선정요건) 제28조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되려는 건설기술인은 규칙 제45조제3호의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 <u>1. 제23조제5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u> <u>2.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자</u> <u>3. 건설기술인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을 것</u>
<u><신 설></u>	<u>제30조(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건설기술인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평가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 문제의 출제</u> <u>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u> <u>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우수건설기술인 최종 선정에 대한 심의</u> <u>2.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u> <u>④ 선정기관은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u>
<u><신 설></u>	<u>제31조(선정절차 등) ①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u> <u>②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u> <u>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u>

	<u>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 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u> <u>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u> <u>⑥ 선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⑦ 선정기관은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u> <u>1. 책임기술인의 경우: 3년</u> <u>2. 분야별 기술인의 경우: 3년</u> <u>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2년</u> <u>⑧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현황을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u>
--	--

	<u>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2조(선정취소) ①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u> <u>2. 우수건설기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u> <u>② 선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선정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3조(우대) ① 발주청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할 때,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그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 유효기</u>

	<u>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u> <u>② 발주청이 우수건설기술인 우대를 위하여 명단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③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 <u>1. 우수건설기술인 증서 수여</u> <u>2. 그 밖에 선정기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 사항</u>
<u><신 설></u>	<u>제6장 보칙</u>
<u>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3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우수건설기술인 세부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비고
1. 서류심사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 제28조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공고)에서 정하는 종합평가 점수 인정기간에 부여받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이하,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 -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단하며, 동일인이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결과를 2회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중 90점 이상인 결과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적격으로 판단	
	업무정지 이력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이력 포함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	
	형사처벌 이력 (건설기술인 업무 관련)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법 위반 이력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간주)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적격으로 판단	
	벌점 이력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벌점 부과 이력 포함 여부 확인 최근 2년간 합산벌점이 1점 이하일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무사고 이력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근무현장과 기간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csi.go.kr/intro.do)에 등재된 최근 5년 간 사망사고 이력과 대조하여 확인 사고사망 발생 현장에 근무 이력이 없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단. - 사고사망 발생 현장에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 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통해 신청인의 직접적인 과실 또는 관리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접심사 대상으로 포함. - 선정 이후에도 허위 작성으로 밝혀지면 선정 취소 가능	
2. 면접심사 (100)	대표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 신청자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경력, 수행 역할, 전문 분야, 현장 경험 등을 기술한 ‘대표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를 제출 - 해당 서류는 면접 전 사전검토를 통해 면접 질문 구성 및 신청자의 주요 경력 확인에 활용되며, 신청 시 선택한 ‘선정 분야’ (예: 건축시설, 단지개발 등)와 관련된 대표 프로젝트 3건을 중심으로 주어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 기술 내용은 프로젝트별 수행 역할, 기여도, 기술적 난이도 등을 중심으로 서술.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해당 기술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여 불일치가 없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 선정 이후에도 허위 작성으로 밝혀지면 선정 취소 가능	
	가. 전문 지식	구조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설계도서 등을 해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	
		시공	도면 및 시방서를 기반으로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시공순서, 자재 및 장비 활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						비고
3. 종합 점수	나. 전문소 양	안전 및 품질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관련 규정, 관리 기준 및 첨단기술 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사업관리	고난이도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조직관리·문제 조정· 의사결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경험과 혁신성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수행하고, 효율성·안전 성·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윤리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공정하 게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위기대응 능력	안전사고, 자연재해, 자재 수급 지연, 설계 변경 등 위기 상황에 신속 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기술적·관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 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기술 정보를 명확히 전달 하며 협업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개방성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접근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 경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						
	* 면접은 전문지식과 전문소양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5개 평가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진행함. 각 영역은 20점 배점 문항 2개와 10점 배점 문항 1개로 구성되며, 총 6문항에 대해 아래의 등급 기준에 따라 응답을 심사함. 면접심사위원의 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최종 득점을 산정함.								
	* 개별 문항의 평가결과가 ‘미흡’인 경우, 문항 과락을 적용함.								
			등급	부적격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점수	0%	20%	40%	60%	80%	100%
	-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면접심사를 통해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 종합점수는 평가영역별 가중치(a, b)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가중치의 값은 선정계획 수립 시 결정하도록 한다. - 종합점수 = a × 전문지식 영역 점수의 합계 + b × 전문소양 영역 점수의 합계 단, 0 < a, b <1, a + b = 1 - 문항 과락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 대상으로 인정한다.								

사고 확인서

○ 우수건설기술인 신청자 인적사항

접수번호			
분 야)1)	건설엔지니어링 분류		직 종
	세부분야		
성 명			생년월일

○ 사고사망 유무 확인

※ 사고사망 사건 유무와 건수 기재, 사고사망이 있을 경우 각 건마다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사고사망 유/무	☐ 있음 ☐ 없음
및 건수	()건

○ 관련 사고 개요

CSI 사고번호			사고일시	
사고명				
사고 당시 상기인의 직무	☐ 책임 기술인 ☐ 분야별 기술인 ☐ 기술지원 기술인	사고 당시 소속		
사고내용 및 본인 관련성				

본인은 여기에 기술된 사망사고에 직접적인 과실 또는 관리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 . . .
본 인 : (서명)

※아래 칸은 심사 및 검토자가 작성하는 내용이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자 : . . .	검토 일자 : . . .
심사자 : (인)	검토자 : (인)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참조

대표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

○ 인적사항

접수번호				
분 야1)	건설엔지니어링 분류		직 종	
	세부분야			
성 명			생년월일	

○ 대표 프로젝트 3건 소개 (※사업명과 참여기간은 반드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일치해야 함)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 수행역할, 기여, 기술적 난이도 등을 서술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 수행역할, 기여, 기술적 난이도 등을 서술		

참여기간	사업명	담당업무
※ 수행역할, 기여, 기술적 난이도 등을 서술		

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참조